

한 이화인을 위한 인권·성폭력 대응 지침서

이화 인권 가이드북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
EWHA WOMAN'S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안내

본교에서는 인권센터 규정 제7조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인권 및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은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 이화의 모든 구성원이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 ①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학부, 대학원 모두 포함) 및 교직원
- ② 교육목적: 학내 구성원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 ③ 교육과정: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 ④ 참여방법

a. 사이버캠퍼스(<http://cyber.ewha.ac.kr>) 접속

→ '비교과과정'의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클릭

→ 세부교육화면에 접속한 상태에서 동영상 강의 수강

(언어 선택 가능)

b.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태블릿 PC에 다운로드

→ 스마트폰/태블릿 PC로도 교육이수 가능

*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 외 Chrome, safari 등 브라우저로 수강할 경우 이수 확인 불가

- ⑤ 수료확인 및 수료증 발급 방법 :

사이버캠퍼스 좌측 메뉴 [비교과과정] → [수료확인]

01 인권이란? 04

02 성희롱·성폭력이란? 05

03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07

교수, 직원 - 학생 사이 07

데이트/동료/선·후배 사이 08

동성 사이 08

대학 내 성폭력적 문화 09

직장에서 10

사이버 공간에서 11

디지털 성범죄 12

스토킹 14

04 상황별 대응 방법 17

성희롱 피해 17

강간 등의 피해 22

스토킹 피해 25

피해자의 친구일 때 29

05 알아둬시다 31

06 인권센터 이용 안내 32

부록 1. 함께 점검해 봐요 34

부록 2.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36





01 인권이란?

인권

- *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왔고,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이 수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중 발생한 참혹한 인간 존엄성의 침해, 그중에서도 나치정권에 의한 유대인, 집시, 장애인 등 집단학살 만행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기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02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폭력

- * 성폭력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며, 따라서 동의 없는 일방적인 모든 성적인 언동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 * 이에겐 강간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치근거림, 불쾌한 성적 언어,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포함됩니다.



더하기

우리 학교의 인권센터 규정에는 성희롱과 성폭력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성희롱**: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연구, 행정업무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제3호)
- **성폭력**: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제2조 제4호)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성적인 언동의 예시

1.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03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교수, 직원-학생 사이

- * 학생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 * 학점, 논문 통과, 진로 등을 빌미로 일방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혹은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 성적 언행을 통하여 학생의 학업 능력을 저해하거나, 불쾌한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Case. 01

- ○○대의 교수가 강의 시간 중 졸고 있는 학생에게 “자네 밤업소 나가나?”라고 이야기하여,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수업 분위기를 불쾌하게 만들고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상실히키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Case. 02

- ○○대의 교수가 학과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도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추는 등 학생을 성희롱 하였습니다. 학생은 가해자가 자신을 지도하는 교수이어서 쉽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는 못하였지만, 심한 성적 불쾌감과 당혹스러움에 괴로워하였습니다.

Case. 03

- 선배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은 ○○대의 학생이 교직원에게 피해 상황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교직원이 피해 학생에게 “성경험은 있나?”, “그 선배하고 어떤 관계냐? 키스 정도는 해 봤겠지?” 등 사건과는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하여 학생에게 심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데이트/동료/선·후배 사이

- *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경우
- * 수업, 학생모임 등의 토론이나 발표시간에 여성들의 발언을 야유, 여성비하적 발언 등으로 무시하거나 배제시키는 경우



Case. 01

- * 학과 행사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선배가 후배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게 후배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희롱 하였습니다. 성적 불쾌감과 당혹감으로 후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동안 선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Case. 02

- * 동아리 MT에서 한 여학생이 방에서 자다가 느낌이 이상하여 눈을 떠보니, 같이 MT에 온 한 남학생이 자고 있는 여학생들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성희롱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놀란 여학생이 소리를 질러 다른 학생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 후에 가해자는 휴학하였습니다.

동성 사이

Case

- * 학과 행사 뒤풀이 장소에서 술에 취한 선배가 대학 1학년인 ○○에게 다가가 느닷없이 키스를 시도하고, 엉덩이와 어깨를 쓰다듬는 등의 불편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는 그 선배가 평소 술을 마시면 후배들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으나, '같은 성인데 설마.....'라고 생각하며 무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그런 일을 겪고 보니,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하는 스킨십과 달랐고, 뭔가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동아리방에도 가기가 싫었고 그 선배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는 그동안 동아리방에서 했던 활동들과 인간관계를 포기해야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더하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바로잡기

◦ 동성 간에는 성폭력이 가능하지 않다?

동성 간에도 성폭력이 가능합니다. 성기삽입 중심적·이성애 중심으로 성폭력 여부 및 경중을 따지는 것은 성폭력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군대 내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바 있듯이, 성폭력은 남녀 간에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문제이므로 가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그 대상은 이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의 심각성은 남성의 성기를 기준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 동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동성애자이다?

동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해서 동성애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이성애자입니다. 그러나 이성애자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에는 '성폭력 가해자=이성애자'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동성애혐오증(호모포비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동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성폭력 범죄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성애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학 내 성폭력적인 문화

- * 공공장소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포스터나 음란물을 게재하는 경우

- * MT, 축제, 신입생 환영회 등의 행사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불필요한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으로 불편한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등

Case. 01

-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학교 응원단의 율동 공연에 앞서 응원단장이 "여러분, 저희 연습 많이 했는데 응원 잘 해주셔야 해요, 응원 잘해주면 여기 뒤에 있는 여자 셋 다 드릴게요."라는 발언으로 불편한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사 참석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Case. 02

- ○ 대학교의 학생 수백 명이 집단으로 몰려와 이화여자대학교 대동제 폐막제가 진행되는 중, 운 동장과 무대를 가로지르면서 폐막제 행사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막제에 참가 중이던 많은 이화인들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이후 이화인들은 이 사건을 집 단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 ○ 대 총학생회와 예방 대책 및 처벌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장에서

- * 직장 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일방적인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
- * 고용, 승진 등을 빌미로 일방적인 성적 언행을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혹은 성적 요구 에 대한 거부로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 성적인 언행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Case

- 대학 4학년의 졸업예정자인 ○ ○ 는 첫 직장에 입사하 였습니다. 입사 직후부터 이 회사의 전무는 신입사원의 약한 입지를 이용하여 졸공 ○ ○ 를 언어적·육체적으 로 성희롱 하였습니다. 전무는 '예쁘다', '사랑한다'면서 신입사원의 손을 어루만지거나 어깨를 쓰다듬는 등 성 희롱 하였고 급기야는 저녁을 사주겠다고 속이고 여관 앞으로 차를 태우고 가서 성관계를 강요하기까지 하였 습니다.



더하기

입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 면접과정에서도 성희롱이 발생합니다. 면접은 사무실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고용주나 상사, 직원들이 여직원에게 어떠한 태도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 이전에 여직원이 자주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 * 성관련 욕설,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의 강요, 일방적인 가상 성관계 진행이나 성관계 요구 등 이 쪽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혹은 온라인 대화 도중에 이루어지거나 게시판에 게재되는 경우
- * 여성 집단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보내거나 게재하는 경우
- * 성 파트너를 구한다는 내용 등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상 대방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로까지 확장시키는 경우

Case

- 한 통신사의 ○ ○ 대학교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점수로 치면 연고대와는 비교도 안 되면서, 서울대에 게만 다리를 벌려주는 고급 콜걸'과 같은 내용이 담 긴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와 여성위원회는 이 글이 이화여자대학교 전체를 성 적으로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내용이라는 문제를 제 기하였고, ○ ○ 커뮤니티 관리자의 공개사과로 사건 은 종결되었습니다.



더하기

사이버불링이란

다수의 가해자가 개인이나 소수의 피해자에 대해 사이버공간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일체의 행위(집단 따돌림, 왕따, 구박, 이じめ, 폭력 등)라 할 수 있다. 개인이 개인을 불링하는 행위는 사이버스토킹이라 할 수 있다.

♣ 이규호(2014), 사이버불링에 대한 형법적 대응, 법학연구 제56집을 참조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제70조 제1항 사이버명예훼손(사실 유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70조 제2항 사이버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한 문언·음향·영상 등 배포·판매·공공연한 전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스토킹(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 반복):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디지털 성범죄

- *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말한다.
- *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합니다.
- * 현재 형사 처벌의 대상인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을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 * “디지털 성범죄물”은 ①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을 포괄합니다.

더하기

- **불법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음변보는 행위, 성행위
- **비동의 유포·재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독방에 유포
- **유통, 공유**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유포 협박**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 **사진합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지인능욕)
-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DB를 참고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적용 법률

유형	적용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내지 제3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유포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제324조 (강요)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적용 법률

유형	적용 법률
합성 제작·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소지·구입·저장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이용 성폭력	유통·소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 (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과태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착취·그루밍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조 제1항 1호 (벌칙)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제3항 (비밀누설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스토킹

Case. 01

- △△는 헤어질 여자 친구 ○○가 다니는 모모여대 앞에서 '일반적인 이별통보는 무효'라고 쓴 피켓을 몸에 두르고 "○○는 돌아오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쓴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학생과 행인들에게 ○○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복사물을 나눠주는 등 돌아와 줄 것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자인 ○○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용기 있는 자만이 미안을 얻는다. 부디 성공하길~' 등 주변의 지지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Case. 02

- 는 인터넷 게임방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를 커피숍에서 한번 만난 이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는 매일 수십 통의 메일을 보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은근한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하여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느 놀하고 같이 있냐?'며 ○○의 사생활을 간섭하고 마치 의처증이 있는 남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이제는 점점 상대가 너무나 싫고 두렵습니다. 이젠 전화벨만 울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증세가 생겼습니다.

더하기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 대하여 스토킹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스토킹 유형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팩스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내게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진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Case. 03

- 는 3년간 사귀던 남자 친구 △△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뒤 끊임없이 협박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귀면서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이 힘들었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서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하고 헤어지자고 했을 때 △△가 칼로 자살하겠다고 위협하여 ○○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더하기

2024년 1월 12일 부터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규정 삭제!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흥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성희롱 바로 알기 Q&A

Q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나요?

A 원치 않는 행위가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Q 성희롱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면 문제가 되는 성적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 하는 점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언동에 대한 거부의를 표시해야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할 때는 분위기나 여건상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는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행위자가 알 수 있도록 암시적인 거부의를 표현하거나 동료 또는 선배, 교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거부의를 표현한 경우, 향후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대학 내 성희롱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수업 또는 진로 지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Q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성적 언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까?

A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할 경우 당연히 받아들이야 하는 줄 알고 명시적인 거부를 못한 채 묵시적으로 용인할 수 있으나, 점차 성적 굴욕감을 강하게 느껴 성희롱으로 주장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까?

A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Q&A는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예방에서 대응까지」, 여성부에서 발간한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창조하였습니다.

04 상황별 대응방법

성희롱 피해

Quick Guide

1.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2.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3.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4. 인권센터 등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해자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합니다.

1. 개인적 조치

가해자에게 거부의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가해자를 대면할 경우에는 제3자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거부의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거나, 피해 발생 당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후에 편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성희롱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지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고, 발송했다는 증거를 남겨둡니다.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육하원칙에 의해 피해정황을 정확하게 기술해두고, 목격자, 증거, 피해자의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도 자세히 기록해둡니다. 이러한 기록은 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주변인들과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 혼자서의 대응이 어렵거나 효과가 없을 때에는 주변인들과 의논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편지로 항의할 경우

-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 피해자의 요구 사항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단, 편지 내용 중 협박이나 기타 위협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이메일로 보낼 경우 <보낸편지함>에 보관을 해 두고, 편지로 발송할 때에는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나중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 **내용 증명** : 우편을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를 말합니다.
- **효력** : 성희롱으로 인해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특정한 시점에서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보내는 법** : 작성한 내용을 복사 등을 통하여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 접수시킵니다. 우체국에서는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통은 발송인이 보관하도록 되돌려 줍니다.

2. 교내 인권센터 이용

- 교내 규정 및 인권센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2001년 [성희롱 등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인권센터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적용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32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가해자를 대할 때는 이렇게 해요!

1. 주장하기

'자기주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그러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무례가 아닙니다. 자기주장은 가해자가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아는 사람일 경우 사용하기 적합한 1단계 반응입니다.

① 먼저 자신의 느낌을 믿고 인정합니다.

아는 사람에 의해 성희롱피해를 입으면 두려움, 불쾌감, 모욕감, 당혹감, 배신감 등과 함께 혼란스러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친밀한 사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나 신뢰감이 있었을 경우, 자신이 겪은 상황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느낌을 믿으면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성희롱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의사를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자기주장을 할 때에는 말투나 표정은 부드럽게 하더라도 느낌, 생각, 바라는 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심 할 여지없이 '고의적 성희롱'입니다. 자기주장의 방식은 대면을 통한 직접적인 방식, 쪽지나 편지, 이메일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 등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요구하기

‘요구하기’는 자신의 느낌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규정과 함께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방식은 역시 위의 ‘주장하기’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직접 대면, 제3자 동반 대면, 이메일, 내용 증명 보내기 등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가해자가 한 행동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대가 한 행동이 성희롱이라는 것을 가해자 및 제3자가 알게 합니다. 나의 말로써 상대가 한 행동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규정합니다.

②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게 합니다.

가해자가 이러 저러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농담 한마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문제제기한 사람을 비난하더라도, 그것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당신이 한 행위는 성희롱이며,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 줍니다.

③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주장합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어려운 상대일지라도 상대의 눈을 보면서 확고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부탁이지만’, ‘괜찮으시면’ 등의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이고 당당한 태도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 한국여성민우회에서 발간한 『성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2000)를 참조하였습니다.

3. 법적인 구제 요청

★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고용노동부를 통한 법적 구제

교내(사내)기관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단체·학교·국가 기관 등에서의 피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업장에서의 피해는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 전화: (국번없이)1331
 - <http://www.humanrights.go.kr>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
 - 전화: (국번없이)1350
 - <http://minwon.moel.go.kr>



★ 민사소송

사업주(기관장)와 성희롱 행위자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힌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간 등의 피해

Quick Guide

1.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2. 만약 위급한 상황이라면 범죄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합니다.
3.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에 갑니다.
4.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둡니다.
5.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7. 인권센터 등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8. 고소여부를 결정합니다.
9.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1. 개인적 조치

★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에 갑니다.

초기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고,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 피해 후에는 임신, 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자가 몸속에서 살아있는 시간은 48시간 정도이므로, 그 안에 병원에 가야 증거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거물이 씻겨서 소멸될 수 있으므로 몸을 씻지 않고 병원에 가야하며, 입은 옷 그대로 가야 옷 등에 묻은 다른 증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관 목록은 부록을 참조하세요)

★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1) 사건현장을 보존해 둡니다.
피해당시 입고 있었던 옷, 피해현장에 남겨진 가해자의 머리카락이나 음모 등과 같은 증거물을 보관해둡니다. 증거물은 종이봉투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 2) 몸에 멍이나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 3)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이 대응했던 방법, 가해자의 인상착의나 신체적 특징, 태도와 행위 등의 사건정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4) 진단서를 발급 받아 놓습니다.

➔ 더하기

성폭력 피해자 진료 영역

- 구급 처치 및 생명을 위협하는 손상에 대한 진단과 진료
- 병력 청취와 피해상황 청취 및 기록
- 임신 및 성병 등의 예방 치료
- 진료치료 후의 상담 및 조치
- HIV 검사 등을 통한 추적 치료
- 가해자의 정액, 머리카락이나 음모, 혈액 등의 증거물 채취

2. 교내 인권센터 이용

★ 위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조치 및 필요한 정보 제공

★ 법적 정보 제공 및 지원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소가 결정되면 수사과정 및 법적 절차에 관한 안내와 지원, 법정 지원을 합니다. 물론, 고소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철저히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 정서적·심리적 지원 및 사후 상담 지원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족, 연인, 기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심리 상담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법적인 구제 요청

성희롱 피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상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고소 이후에 겪게 될 과정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견어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일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발간한 '성폭력에 관한 법률지침서'를 참조하였습니다

★ 자신이 입은 피해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를 알아봅니다.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고소하여도 '범죄인정안됨'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도 기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소를 했을 때 겪게 되는 과정들을 살펴봅니다.

조사와과정에서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서의 증언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사나 재판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경제적·정신적으로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 겪게 될 어려움을 잘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고죄가 폐지되었고,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남성도 포함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유사 강간죄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모든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고소를 통해 어떤 의미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고소를 결정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에 대한 심리적·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또 다시 범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앨 수 있고, 가해자와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이 심각한 범죄이며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알려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이후의 과정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보세요

1.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 일어난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의 몸이 성적으로 반응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성폭력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부주의했다거나,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의 행동이 성폭력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가해자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2.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를 찾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혹은 이후에, 당신은 평소와는 달리 두려움, 수치심, 분노, 죄의식 등 복잡한 감정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받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자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지지를 받는 경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빨리 정서적 상처가 치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Quick Guide

1.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2. 가해자의 행동에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3.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은 단 한번으로 충분합니다.
4. 인권센터 등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5. 피해 사실에 관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둡니다.
6.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협박, 피해자의 소유물 파괴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7. 주변 사람들(가족,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에게 피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8.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1. 개인적 대처

★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 1) 집 근처 24시간 상점이나 경찰서 위치를 파악해 둡니다.
- 2) 상대는 편집증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으므로 설득하려고 애쓰지 말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 3) 위기 상황에서는 범죄신고 112로 신고합니다.
- 4) 위협이 있을 때 혼자 있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집에 보안 장치와 문단속을 철저히 해 둡니다.

★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을 노출하지 마세요.**

- 1) 만약 전화번호가 스토키에게 노출되었다면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합니다.
- 2) 전화번호를 바꿀 경우,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줍니다.
- 3) 집으로 우편물을 받지 않습니다.
- 4) 메일주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스토키가 페이스북 등 여러 SNS를 통해서 접근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 **단 한번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단 한번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밝히고, 그 외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키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피해자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게 되면 스토키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사람들(가족, 직장 동료, 친구)에게 상황에 대해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남녀관계'나 '애정문제'가 아니라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에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1) 피해 상황을 기록해 둡니다.
- 2)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협박 메일이나 편지, 전화, 선물, 물품 파손 행위, 폭행(녹음, 사진, 증인,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해 둡니다. 지금 당장은 고소할 마음이 없어도 점차 스토키의 양상이 심해지면 법적 대응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둡니다.

2. 교내 인권센터 이용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폭력이 없어도 위협이나 협박 역시 폭력 행위입니다.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기 전에 인권센터 등 전문상담기관에서 대응방법, 법적 정보 등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적인 구제 요청

★ **스토키피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키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키처벌법 이전에는 범칙금 10만원 부과에 그쳤지만, 10월 21일부

터는 징역 최대 5년 부과가 가능합니다. 스토키처벌법에 따른 범죄 등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여 적극적 신고 등을 통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접근금지처분 신청 및 고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수사를 요청할 경우 자신의 정보를 가해자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요구하세요. 일단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주거지를 옮기거나 주 행동반경을 바꾸고, 경찰 조사 등을 받을 때 노출되지 않도록 경찰이나 상담기관 등 관련자들의 협력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스토키처벌법에 따른 스토키 범죄 시 대응 단계

응급조치

- ✓ 스토키행위 제지 및 향후 스토키 행위 중단 통보
- ✓ 스토키 행위 지속반복에 대한 처벌 서면경고
- ✓ 피해자와 분리 및 범죄 수사
- ✓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 안내
-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등 인도

*스토키처벌법 제3조

긴급응급조치

스토키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기간	1개월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키처벌법 제4조~제7조, 제20조

잠정조치

스토키범죄 재발 우려 시

- ① 스토키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 ②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③-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기간	② ③ 3개월(회면장가능) ④ 1개월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키처벌법 제8조~11조, 제20조

- ★ 스토키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다음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 보호시설로 연계
- ✓ 임시숙소 제공
- ✓ 신변경호
- ✓ 맞춤형 순찰
- ✓ 스마트 워치 대여
- ✓ CCTV 설치
- ✓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지원
- ✓ 112 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 별도 등록 및 관리

♣ ‘스토킹 범죄 대응방안’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스토킹처벌법과 스마트 서울 경찰 NEWS 제124호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마음가짐은
이렇게 해요!

[스토킹에 대처하는 마음가짐]

1. 자책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내가 혹시 무슨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폭력과 협박의 위험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스토킹은 도망을 다니거나 피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호소나 동정심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2. 피해자로서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피해자’라는 단어가 주는 무기력한 느낌이 싫거나 혹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고,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로서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행동 하나 하나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착하게 대처해 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일 때



1. 친구를 믿어주고 안심시킵니다.

“너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옆에서 도와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2. 경청합니다.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일이 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일임을 받아들입니다.

3. 신체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봅니다.

만약 친구를 지지해 주고 싶은 마음에 안아주거나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등 친구와 신체접촉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친구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친구는 지금 신체접촉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을 하기 전에 미리 물어본다면, 친구는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감각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4. “네 탓이 아니야”라고 얘기해 줍니다.

- 1) 사건 발생 당시 및 사건 발생 이후에 보여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옷을 어떻게 입었건, 술을 마셨건 아니건, 범죄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 2) “좀 더 저항하지 그랬니?” 또는 “그런 데를 왜 갔니?”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당신이 피해자를 ‘잘못’했거나 ‘나쁘게’ 행동했다고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떠한 말이나 행동, 몸짓도 지금 이 순간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5. 침착하게 할 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 1) (강간 등의 피해의 경우) 가능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도록 설득하고 동행합니다.
- 2) 피해자에게 증거확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피해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6.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1) 모든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재촉하거나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 2) 피해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함께 알려줍니다. 역지로 원하지 않는 정보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 3)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당신과 공유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니?”라고 물어봐 줍니다.

7.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 1)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 2)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증거임을 말해줍니다.
- 3) 교내 인권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8.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상담을 받습니다.

주변인에게도 누군가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 가족, 주변인들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더불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기

누군가 성폭력 피해 혹은 신체적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을 때

- 1) 국번 없이 112, 119에 신고 전화(공중전화기에서 동전없이 신고전화 가능)
- 2) (피해자에게)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데 없나요?”, “제가 구급차를 불러드릴까요?”라고 물어봅니다. 또한, “제가 경찰에 연락할까요?”, “제가 도와드릴 것은 없나요?”, “어디 연락할 만한 곳이 있나요?”라고 물어본 후, 도움을 요청합니다.

05 알아둡시다

평상시에는

- 1)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내가 그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시다.
- 2)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거부 의사를 단호하게 밝힙니다.
- 3) 어디서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올 수 있을 정도의 비상금을 소지하고 답니다. 범죄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1366을 외워둡시다.



위기상황에서는

- 1) 112에 신고합니다.
- 2)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무조건 상대방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 1) 개인정보 기입은 신중하게 하며, 회원가입 시 비공개로 합니다.
- 2) 아이디나 대화명은 사용자의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무성적(無性的)인 것을 사용합니다.
- 3) 비밀번호를 잘 관리합니다.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4) 원치 않는 메일이나 쪽지에는 답장을 하거나 대응하지 않습니다.
- 5) 채팅방에서 일대일로 대화를 나눌 때는 특히 주의합니다.
- 6)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 7)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 성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기능을 익혀둡니다.
- 8) 컴퓨터 기술(쪽지/이메일 수신거부, 화면캡처 등)을 익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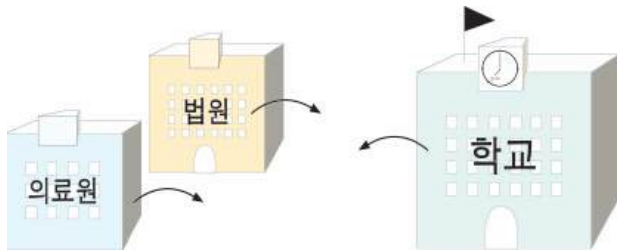
06 인권센터 이용안내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상담을 하고자 할 때 혹은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때 이화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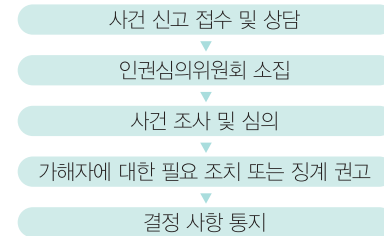
-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및 사건 대응책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 법률과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필요할 경우에는 교외 기관에 연계하여 사건해결을 지원합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 우리 학교의 구성원(교직원, 시간강사, 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임시직,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는 인권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권심의위원회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여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권센터에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본교 규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신고는 서면 제출,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된 사건 처리 절차〉



센터에서 하는 일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3.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4. 관련기관 연계 등의 대응책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5.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합니다.
6.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및 예방책에 대한 조사와 연구활동을 합니다.

인권센터 이용 방법

- 상담 및 신고
 - 전화 : (02)3277-3229
 - E-mail : humanrights@ewha.ac.kr
- 위치
 - 이화여자대학교 학관 651호
- 운영시간
 - 월-금 오전 9:00-12:00, 오후 1:00-5:00



부록 1: 함께 점검해 봐요

다음 항목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아 넘기기 쉽지만 데이트 성폭력으로 연결되거나 그것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 태도, 생각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당신의 데이트 관계가 건강한지, 아니면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폭력적인 통념이나 행동들을 '남만적'이거나 '남자다운'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혹은 친구들과 함께 아래의 질문들을 꼼꼼히 읽고,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함께 토론하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나의 데이트 상대의 폭력성향은?

1) 말로 하는 폭력들

다음은 데이트 성폭력 발생시 가해자가 하는 말들입니다. 다음 중에서 당신이 사귀고 있는 상대가 자주 사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말이 있나요? 해당되는 칸에 V표 하세요.

- ☐ 날 못 믿어? 난 널 사랑하지 않아?
- ☐ 집에 가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야. 한잔만 더 마시면 집에 보내줄게.
- ☐ 나만 믿어!
- ☐ 긴장하는 거 같다. 괜찮아. 어깨에 손을 올리게 해줄래?
- ☐ 괜찮아. 너도 곧 좋아하게(즐기게) 될 거야.
- ☐ 네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보여줘.
- ☐ 길거리에 깔린 게 여자야.
- ☐ 다른 남자들은 섹스에만 관심있지만 나는 너를 인격체로 좋아하는 거야.
- ☐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 ☐ 너는 나를 너무 흥분시켜.
- ☐ 너는 특별해.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
- ☐ 같이 잠만 자자. 섹스는 안할게.
- ☐ 네가 너무 필요해. 네가 너무 탐이나.
- ☐ 어차피 결혼할건데 뭐 어때? 혹시 난 그냥 지나가는 남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냐?
- ☐ 술도 깬 겸 비디오방에서 쉬었다 가자. 아무 짓도 안 할게.
- ☐ 내가 나쁜 짓 할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내가 치한이라도 되냐?
- ☐ 끝까지 가지는 않고 키스랑 애무만 할게.
- ☐ 너랑 하나가 되고 싶어.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질 거야.
- ☐ 절대로 헤어지자고 하지 않을테니 걱정말
- ☐ 순결을 지켜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 남자가 평등해 지려면 구시대적인 순결 이데올로기는 버려야 한다고!

· V표한 것에 대해 친구나 애인과 함께 이야기 해 보세요.

2) 언어적 · 신체적 · 정서적 폭력들

이 항목들은 데이트 중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언어적 · 신체적 · 정서적 폭력들입니다. 다음 중에서 당신이 사귀고 있는 상대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 ☐ 애기하고 있는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애기하는 방법으로 말을 끊거나 방해한 적이 있다.
- ☐ 단지 여자가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있다.
- ☐ 애기하고 있는 동안 애기에 집중하기보다 계속 내 가슴에 시선을 두고 애기를 들은 적이 있다.
- ☐ 나를 다른 여자보다 예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대한 적이 있다.
- ☐ 여성의 몸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하거나 코멘트를 한다.
- ☐ 다른 남자와 함께 여자의 몸에 대해 언급하거나 비평한다.
- ☐ 그는 여자들한테서 성차별주의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 나는 그에게 '섹스보다는 마음을 더 나누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된다.
- ☐ 다른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속인다.
- ☐ 그는 피임이 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 ☐ 그는 내가 남성의 폭력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 여성을 **년 등으로 부른다.
- ☐ 여성을 위협하거나 겁주려고 자신의 목소리나 몸을 이용한 적이 있다.
- ☐ 그가 내게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를 협박하거나 내 소유물을 망가뜨리거나 혹은 스스로 자해한 적이 있다.
- ☐ 여성을 때리거나 치거나 밀친 적이 있다.
- ☐ 여성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성폭력 근절을 위한 남성 서포터즈 컨퍼런스 - "남성적 관계방식과 성문화 돌아보기"> 자료집(2003, 한국성폭력상담소), 그리고 MEN'S WORK(1992, HAZELDEN)를 참조하였습니다.

- 몇 개나 V표 됐나요?
- 당당하게 자신의 불쾌 감정을 표현하고 시정을 요구해 보세요.
- 불쾌감정 표현조차도 위협적이게 느낀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3) 만약 당신이 다음과 같이 느낀다면 당신의 데이트 관계는 위험합니다.

- ☐ 데이트 상대의 기분이나 분노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 ☐ 데이트 상대의 기분과 행동에 대해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낍니까?
- ☐ 데이트 상대 외에는 거의 친구가 없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점점 고립되는 것 같습니까?
- ☐ 데이트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그 사람의 요구에 쉽게 응합니까?
- ☐ 데이트 상대가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그 사람과 헤어지기가 두렵습니까?

2.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 대한 잘못된 통념 바로잡기

1) 내가 데이트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폭력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당사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변화시키고자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2)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면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언어적,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만큼 파괴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질투와 소유욕은 진정한 사랑의 한 표현이다.

지나친 질투와 소유욕을 보이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질투와 소유욕은 폭력과 학대의 초기 형태입니다.



부록 2: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긴급 전화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24시간 365일 운영)	
범죄신고	112	(폭력 및 범죄 상담)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기관(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1331	https://www.humanrights.go.kr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2133-6378~9	http://eungdapso.seoul.go.kr/	
해바라기센터(서울)			
서울(서울대병원)	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송빌딩 2층	02-3672-0365	www.help0365.or.kr
서울동부경찰병원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1층	02-3400-1700	smonestop.or.kr
서울남부(보라매병원)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 희망관 2층	02-870-1700	www.smonestop.or.kr
서울북부(서울의료원)	서울 중랑구 신내로16길 33 신내의료 안심주택 1층	02-3422-4101	www.smonestop.or.kr
성폭력 상담 기관 및 단체(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338-5801~2	www.sisters.or.kr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시민공간 나무 3층	739-8858	www.womenlink.or.kr/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은평구 녹번동 1-5번지 1층	2263-6464, 5	hotline.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23호 현대빌딩 208-3, 오성빌딩 301호	883-9284	https://crisis-center.or.kr/
기독교여성상담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여성미래센터	2266-8275	www.8275.org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강동구 천호동 425-5 대우메시티 411호	3013-1367	www.wde.or.kr
서초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7길 10-10 4층	599-7606	http://www.ssvrc.or.kr/
한국 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47 드림두산세아스타워 601호	817-7959	cyber-lion.com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02-735-8994	d4u.stop.or.kr/

성폭력 진압 의료기관

지역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해바라기센터 여부
중 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 서울대학교병원	02-2072-4154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서울해바라기센터 [02-3672-0065]
중 구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02-2260-7114	산부인과, 정신과 등 27개 과목	
영 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치로 59	02-709-9114	산부인과, 정신과 등 24개 과목	
광 구	건국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02-2030-7147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23개 과목	
동 대 구	삼육서울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 82 삼육서울병원	02-3390-4145	산부인과 등 21개 과목	
동 대 구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02-920-9114	산부인과 등 18개 과목	
중 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02-2276-7000 (대표) 02-2276-7401 (응급의료센터) 02-2276-7728 (의료사회복지팀)	산부인과, 정신과 등 24개 과목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02-3422-4101]
강 북 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73	02-920-5849	산부인과, 정신과 등 24개 과목	
노 동 구	한일병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08	02-901-3000	응급실, 산부인과	
노 원 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	02-950-1405	산부인과, 정신과 등 25개 과목	
노 원 구	을지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8	02-970-8570	산부인과, 정신과 등 24개 과목	
인 평 구	인성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64	02-309-0909	산과, 부인과 등 8개 과목	
인 평 구	은산부인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37 영산빌딩 4층	02-359-7175	산부인과	
서 대 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세브란스병원 본관 1층 응급진료센터	02-2227-7777	산부인과, 정신과 등 26개 과목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02-3271-1375]
서 대 구	동신종합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6길 32	02-396-9161 (내선2130)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12개 과목	
영 천 구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로 1071	02-2650-5114	응급의학과 외 29개 과목	
강 서 구	유광시여성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94	02-2608-1011	산부인과, 정신과 등 23개 과목	
강 서 구	보림정신과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84, 동서빌딩 203호	02-2063-3705	정신과, 신경과	

지역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해바라기센터 여부
구로구	구로성심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27	02-2047-1500	신부인과, 신경외과 등 13개 과목	
	구로대학교 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02-2626-2014	신부인과, 장신과 등 24개 과목	
	영등포구 이상대신부인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69	02-842-0199	신부인과	
	영등포구 김중률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8	02-831-1585	내과	
관악구	강남고려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인로 242	02-874-8001	내과, 정형외과 등	
	관악구 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1877-8875	신부인과, 장신과 등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102	02-6299-1114	신부인과, 신경장신과 등 25개 과목	
	동작구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02-870-2114	장부인과, 장신외과 등 23개 과목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02-870-1700]
서초구	기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02-2258-5514	신부인과, 장신과 등 40개 과목	
	송파구 국립강원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123	02-3400-1700	신부인과, 장신외과 등 31개 과목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02-3400-1700]
	송파구 미미한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14 2층	02-6952-3130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장신과, 침구과 등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아미동1가, 부산광역시대학교병원)	051-244-9147	신부인과, 장신과 등	부산해바라기센터 [051-244-1375]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051-507-3000	종합병원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051-501-9117]
	부산의료원	[가계동]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140길32	053-421-1375	신부인과, 응급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내장항문·소아외과, 진료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053-421-1375]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053-556-9117	신부인과, 장신과 등 19개 과목	대구해바라기센터 [053-556-8117]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바촌로 217	032-580-6000	종합병원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032-582-1170]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032-460-3547	종합병원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032-423-1375]
광주	기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1544-9004	종합병원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032-280-5678]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재봉로 42	062-220-5114	종합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062-222-1375]
대전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평문대로 365번길	062-220-3114	종합	광주해바라기센터 [062-225-3117]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중구 문화로 282	042-280-8436		대전해바라기센터 [042-280-8436]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
EWHHA WOMANS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이화여자대학교 학관 651호

TEL : (02)3277-3229

E-mail : humanrights@ewha.ac.kr

Homepage : <http://my.ewha.ac.kr/humanrights>

제작년도 : 2024년